

## 2020년 한옥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공고(안)

서울시는 한옥 및 한옥마을의 역사적, 문화적, 지역적 가치와 자원을 활용한 주민사업 지원을 통해 주거공동체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이 「2020년 한옥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」을 공모하오니,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0. 2. 5.

서울특별시

### 1. 사업기간 : 2020. 3월 말(협약일) ~ 10월

### 2. 대상지역 : 한옥 밀집지역 등 총 12곳(종로구, 성북구, 은평구 관내 지역)

- 북촌, 경복궁 서측지역, 인사동, 운현궁 주변, 돈화문로 일대, 익선동, 앵두마을, 선잠단지, 성신여대 주변, 정릉시장 주변, 보문동 일대, 은평한옥마을

※ 대상지역(한옥밀집지역 등 12곳) 세부내역 등은 <참고자료 1> 참조

### 3. 신청자격 : 대상지역 내 주민모임(3인 이상) 또는 단체 등

- 한옥마을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, 단체, 학생 등
  - 거주주민 : 대상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
  - 생활주민 : 대상지역 내 소재한 사업장(사업자, 종사자), 직장, 학교 등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주민 등
  - 학 교 : 대상지역 내 소재한 초·중·고등학교, 대상지역이 속한 자치구(종로구, 은평구, 성북구) 내 소재하고 있는 대학
    - ※ 초·중·고등학교는 학생 또는 교사 / 대학교는 교수 및 대학생 등
  - 단 체 :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민단체, 비영리법인, 비영리민간단체, 협동조합, (예비)사회적 기업 등 이며, 주민 모임은 단체 회원이 아닌 3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 공동체 모임을 말함
    - ※ 생활주민 및 단체 대표 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

- ※ 지원제외 : 3년 연속지원('17~'19년) 사업, 일몰제에 의해 지원 종료된 사업
  - 동일한 대표 제안자가 3회 이상 선정된 경우
  - 동일한 모임이 3회 이상 선정된 경우
  - 동일 3회 이상 선정된 사업(내용, 성격)의 경우

#### 4. 지원대상 : 한옥과 한옥마을의 자원 및 가치를 활용한 공동체 사업

- 주민 3인 이상 소규모 모임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활동사업
- 한옥과 한옥마을의 역사, 문화적 가치 발굴·보존·활용할 수 있는 사업
- 주민 모임, 단체, 전문가와 함께 지역의 다양한 자원 등을 활용, 한옥마을의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사업 등

##### 〈참고 : 지원사업 예시〉

- ❖ 주거공동체로써의 활성화, 지역공동체의 문화·생태·생활자산 보전 활동 등
  - 주민 공동체 모임, 해설이 있는 한옥 골목길 탐방, 마을탐방코스 개발 및 지도제작
  - 지역주민을 위한 마을포럼, 마을소식지 발간, 한옥마을 주민과 일상 기록 등
  -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청소, 마을골목길 가꾸기 사업, 마을지킴이 활동 등
- ❖ 지역주민의 자긍심 회복과 한옥마을 보존을 위한 책임 공유 및 확산 활동
  - (공공)한옥을 활용한 청소년 한옥학교, 주민 프로그램, 한옥마을 사생대회
  - (공공)한옥을 활용한 독서 토론모임 등 동아리 활동, 전시 및 강좌 운영 등
  - 공정여행 및 한옥마을의 정주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

※ 공공한옥 : 북촌문화센터, 북촌 마을서재, 북촌한옥청 등
- ❖ 마을의 다양한 특화자원을 활용, 마을 체험 및 가치를 부각시키는 활동
  - 한옥마을의 역사학, 인문학, 지역학 강좌 운영
  - 마을의 역사·문화·생활자원 발굴 및 기록화 작업(한옥포털 온라인 게재 연계)
  - 한옥마을 생활 자료집, 주민구술 기록집, 옛사진집 등 발간·배포, 전시 등
  - 마을을 대표할 마을 행사, 마을축제, 마을영화 만들기 등

※ 위 내용은 참고내용으로 한옥마을의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자유롭게 사업제안 가능(단, 일회성 주민 모임, 단순 행사 위주 사업 지양)

## 5. 지원 규모 : 6백만원 ~ 15백만원 이내 지원(자부담 자율편성)

사업유형	내 용	지원액
주민 모임형 (주민, 단체)	○ 주민 공동체 모임, 동아리 활동 등 ○ 마을 내 공동체 강화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	최대 8백만원
마을 특화형 (전문가, 단체 등)	○ 지역 특성 반영 특화 프로그램 운영 ○ 단체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네트워크 사업 운영	최대 15백만원

※ 사업별 최소 지원액은 6백만원이며, 사업내용 및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액 조정 가능

## 6. 사업 접수 및 선정

### □ 사업접수

- 접수기간 : 2020. 2. 17.(월) ~ 2. 21.(금)
  - 접수방법 :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
    - 방 문 접 수 : 서울시청 11층 한옥건축자산과 건축자산문화팀
    - 온라인 접수 : 사업 담당자 이메일(yeoeun86@seoul.go.kr) 접수
  - 제출서류 : 사업 제안서, 사업계획서, 모임 소개서, 개인정보처리 동의서
    - 서울시 홈페이지(고시 공고) 또는 서울 한옥포털(<http://hanok.seoul.go.kr/>)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
- ※ 사전 상담(찾아기는 마을상담) 실시 : 사업담당 이메일(yeoeun86@seoul.go.kr)로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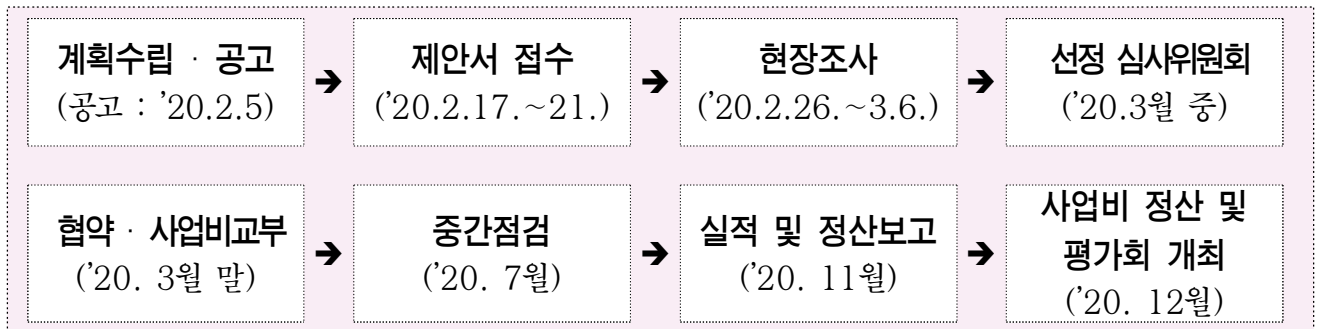
### □ 사업선정

- 심사시기 : 2019. 3월 중
- 선정방법 : ‘보조금심의위원회’를 개최하여 서류심사 및 사전 현장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 선정
- 선정기준 : 사업목적 및 타당성 여부,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등
  - 사업목적 및 타당성 여부
    - 지역 주민과 시민 간 공감대 형성 및 공동체적 가치 창출 여부
    - 마을의 역사적, 장소적, 상징적, 문화적 자원 활용에 있어 한옥과 연계성 여부
    - 지역주민 편의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
  -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
    -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
    -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주민주도 마을가꾸기 기반 마련
    - 지역 구심점 역할 및 타 지역으로의 촉매 확산 가능성 여부 등

### < 기타 지원 사항 >

- 사업계획 작성 컨설팅 및 프로세스 지원 ※ 자치구 마을활동가 중심
- 보조금 지출을 위한 「회계처리 프로그램」 지원 운영
  - 회계 처리방법 설명 및 서류 작성 등 시스템 지원
- 사업 컨설팅 및 주민 회의공간 등 제공
  - ※ 북촌 주민사랑방, 경복궁서측 흥건역 가옥 주민사랑방,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공간 활용

### <사업추진 절차>



## 8. 기 타

- 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지원 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.
-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다른 마을 공동체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.
- 사업 선정 후 회계 및 행정교육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합니다.
- 아래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 환수 및 지원 철회 조치됩니다.
  -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  -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
  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
  -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추진이 지연 되거나,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
- 사업 완료 후 「서울 한옥포털」 내 공유를 위하여 한옥마을 가꾸기 마을 공동체 사업 관련 수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기타 문의사항 등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- 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 박여은 주무관(☎ 02-2133-5582)

참고자료 : 1. 사업 대상지역(서울시 한옥밀집지역 등) 현황 1부.

## 2. 사업비 집행기준 1부. 끝.

### <참고자료 1> 대상지역 현황 등

#### 한옥밀집지역 등

연번	자치구	지역 별	해 당 위 치	비 고
1	종로구	북 촌	종로구 가회동, 삼청동 일대	
2		경 북 궁 서 측	종로구 체부동, 효자동 일원	
3		인 사 동	종로구 인사동, 관훈동 일대	
4		돈 화 문 로	종로구 권농동, 와룡동 일대	
5		운 현 궁	종로구 견지동, 운니동 일대	
6		익 선 동	종로구 익선동 일대	
7	성북구	앵 두 마 을	성북구 성북동1가 105-11 일대	
8		선 잠 단 지	성북구 성북동 62-17 일대	
9		성 신 여 대 주 변	성북구 동선동2가 52번지 일대	
10		정 룡 시 장 주 변	성북구 정릉동 345번지 일대	
11		보 문 동 일 대	성북구 보문동 6가 385번지 일대	
12	은평구	은 평 한 옥 마 을	진관동 한옥지정구역	

#### 신청대상 학교

- 초·중·고등학교 : 대상지역 내 소재한 경우 지원 가능
- 대학교 : 종로구, 성북구, 은평구에 소재한 경우 지원 가능

## 〈참고자료 2〉 사업비 집행기준

### 1.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

가. 예산비목 구분 : 활동비, 사업운영비, 업무추진비

나. 비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

비목 및 세부내역	지급 기준	증빙 서류
활동비	일 8시간 이내, 주당 15시간 미만	
- 일반 활동비	시간당 10,530원	활동기록부(서명), 계좌이체확인증, 원천징수영수증(해당시)
사업운영비		
- 홍보인쇄비	실비정산	- 견적서 또는 명세서(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), 홍보인쇄물 도안 -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+세금계산서
- 소모성물품구입비	실비정산, 도서구입비 포함	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+세금계산서 (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)
- 단기임차료	실비정산	- 견적서 또는 명세서(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) -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+세금계산서
- 시외여비	시외여비: 실비 정산 숙박비: 1인 1실 5만원 기준	-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+세금계산서, 사용내역 증빙자료
- 식비 및 다과비	식비: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: 1인 1식 4천원 이내	- 영수증 - 행사증빙자료(회의록 등), 참석자 명부
- 회의비 및 심사비	2시간 이내: 10만원 2시간 초과: 15만원	- 확인서(서명), 계좌이체확인증, 원천징수영수증(해당시) - 회의 또는 심사 증빙자료(회의록 등)
- 원고비	<b>A4 1매 1.2만원</b> (세부기준) 상하 여백 30mm, 좌우 여백 25mm, 글자크기 12pt, 문단간격 180% - ppt 자료는 슬라이드 2매를 A4 1매로	- 확인서(서명), 계좌이체확인증, 원천징수영수증(해당시) - 원고 사본

비목 및 세부내역	지급 기준	증빙 서류
	인정 (표지, 목차, 간지 제외),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	
- 강사비 및 공연비	주강사 1시간 12만원, 2시간 20만원 보조강사 1시간 5만원, 2시간 8만원	- 확인서(서명), 계좌이체확인증, 원천징수영수증(해당시) - 강의 증빙자료(교안 및 출석부)
	다수인 출강/공연 <sup>1)</sup> 5인 이하: 50만원 / 10인 이하: 60만원 / 11인 이상: 70만원	- 확인서(서명), 계좌이체확인증, 원천징수영수증(해당시) - 공연 증빙자료(사진)
- 교육비	입장료, 여행자보험료 (실비정산)	- 입장료: 입장권, 참석자명단,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확인증+세금계산서 - 여행자보험료: 보험증권사본, 계좌이체확인증
간담회비	간담회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	- 관련 입증서류, 영수증 등

## 2. 비목별 예산편성 집행기준

- 비목 : 사업규모, 진행상황, 성과평가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 시스템 비목란에 등록하는 항목 (활동비, 사업운영비, 간담회비)

### 가. (일반)활동비

-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(마을간사, 공간운영자, 촉진자, 아이돌보미 등)의 활동에 대한 경비로 지급되며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실무책임자 중 1인에 한하여서도 일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음
- 시간당 10,530원으로 지급하며,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음

1)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적용

## 나. 사업운영비

- 보조금 관리시스템에는 수정제안서상 사업운영비 세부 내역별 편성 금액을 합하여 등록
- 사업참여 주민 및 일반주민이 참여하는 교육비를 필수적으로 편성  
 ⇒ 교육비(열린마을강좌)는 제안서 수정단계에서 자치구 및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과 협의하여 확정  
 ⇒ 교육비는 가능한 마을강사, 마을공간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집행

### ① 홍보인쇄비

- 현수막, 간판,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
- 홍보물에는 서울시 브랜드 디자인 및 서울시 한옥마을 공동체 사업임을 표기 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시와 협의한 후 제작(구입)하여야 함

### ② 소모성 물품구입비

- 당해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
-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음

### ③ (단기)임차료

-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,시설,장비,물품,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
-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(lease)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함

### ④ 시외여비

-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비
- 시내여비 : 자부담으로 편성(처리)
- 시외여비 : 실비정산(교통비, 숙박비, 식비)

구분	지급기준
교통비	· 대중교통비(시외버스, 기차) ※ 교통카드, 유류비 지급불가
숙박비	· 1인 1박 기준 50,000원 ※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
식비	· 1인 1식 기준 8,000원

※ 국내·외 항공비용, 해외 체류비용 불인정



⑤ 식비(다과비)

-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
- 식대는 1식 당 8천원 이내, 다과는 1인 4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,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
- 씨앗기(보조사업비 총액이 200만원 이하)인 경우는 50% 이내로, 그 밖의 경우는 20% 이내로 편성 가능함

⑥ 회의비 및 심사비

-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
-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

⑦ 원고비

-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,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
-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

⑧ 강사비

-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
-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

⑨ 교육비

- 사업상 필요 시 교육(탐방)시설 입장료, 여행자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음

⑩ 보험비

- 행사 및 탐방 등을 위한 상해보험비

⑪ 기 타

-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월세, 관리비, 공공요금 등은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함

**다. 간담회비**

-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
- 보조사업 추진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식비, 다과비, 소규모물품구입비, 인쇄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 가능
- 대표제안자 3인과 대표간사(실무책임자)가 사업 수행 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부수적 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5% 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함